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632

제출년월일: 2022. 4. 5.
제 출 자: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최근 타 자치구 기금 횡령 사건 관련하여 기금 지출절차를 개선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14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공무원 지정 :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나. 장부비치 조항 삭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19 법제처 컨설팅 등 참고) 삭제를 권고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7조(자치법규의 정비)

4)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제3편 자치법규의 체제와 개정·폐지 방식, 5.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방식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조례별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2. 2. 21. ~ 2022. 2. 28. (7일)

3)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제2조(「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제3조(「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금회계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제4조(「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제5조(「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운용관: 사회복지기금 계정별 담당 과장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3. 기금출납원: 사회복지기금 계정별 담당 팀장

제6조(「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제7조(「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제8조(「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 회계직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제9조(「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제10조(「서울특별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제11조(「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제12조(「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에 따라”를 “제13조의”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제14조(「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보건소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보건소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보건소장

2. 기금출납원: 위생과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총괄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국장 2.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장부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 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회계법」상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금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문화행정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준용한다.	제8조(기금회계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생략)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③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삭 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총괄관리관과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삭 제>
2.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아동청년과장, 어르신행복과장	2. 기금운용관: 사회복지기금 계정별 담당 과장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 팀장	3. 기금출납원: 사회복지기금 계정별 담당 팀장
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삭 제>

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총괄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총괄관리관은 기획예산과장, 기금운용관은 여성보육과장, 기금출납원은 어린이집확충팀장으로 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 회계직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의 회계직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4조(기금 회계직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관리국장 2. 기금출납원 : 광고물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로과장 2. 기금출납원 :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3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3조의 ----------. 1. ~ 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사건립기금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청사건립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각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2. 기금출납원 : 위생과장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보건소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보건소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보건소장 2. 기금출납원: 위생과장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